# (건축-005)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

공사명	○○ ○○○물류센터 신축공사				
사고일시	2017년 10월 23일(월) 10:30분경		기상상태	맑음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사고 종류	무너짐(붕괴·도괴)		
구조물 손실	옹벽구조물(H=31.3m, L=100m)	인적피해	사망 1명, 부상 5명		
장비 손실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	해당( 〇 )	, 해당없음( )	

# 가. 사고개요

# 1) 공사개요

○ 용도 : 공장

○ 연면적: 115,085㎡

규모: 지하 5층/지상 4층공사기간: 2016.4~2018.2

## 2) 사고경위

○ 인접대지에 기 설치된 흙막이 가시설의 어스앵커(11.5~19m)를 제거하기 위해 2단 가시설의 4단 띠장 해체작업을 실시하던 중 가설 흙막이(연장 120m, 높이 4.3~19m) 및 옹벽(높이 31.3m, 연장 90m, 폭 0.3~0.6m)이 붕괴되어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 사망, 5명 부상(중상1, 경상4) 발생

#### 3) 사고원인

- 당초 흙막이 가시설 해체 및 어스앵커 제거는 배면토사의 하중 및 토압을 건축구조물 PC구조 완료(슬래브 타설 등) 이후 건축물 벽체로 지지할 계획이었으나,
- 건축물 PC구조 설치 완료 전 해당구간의 단독벽체만 우선 시공한 상태에서 가시설물을 해체함에 따라 배면 토사의 하중 및 토압을 지지하지 못하고 건축물 벽체와 함께 붕괴된 것으로 추정

# 나. 사고원인분석

## 1) 직접적인 사고원인

- 붕괴구간은 암반불연속면 방향이 흙막이가 배면토압을 지지하는데 불리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고 연속된 불연속면은 낮은 전단강도의 충전물이 협재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붕괴약 10일전의 강우에 의한 침투수의 영향도 배면지반의 지지저항 약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 배면지반의 불연속면이 불안정상태에 있었고, 흙막이 부재가 허용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추정
- 흙막이 붕괴가 넓은 범위로 확대된 이유는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1열 띠장으로 설계되었고, 흙막이 벽체에 평행한 암반 불연속면이 전 흙막이 구간에 걸쳐 연속되어 분포한 특성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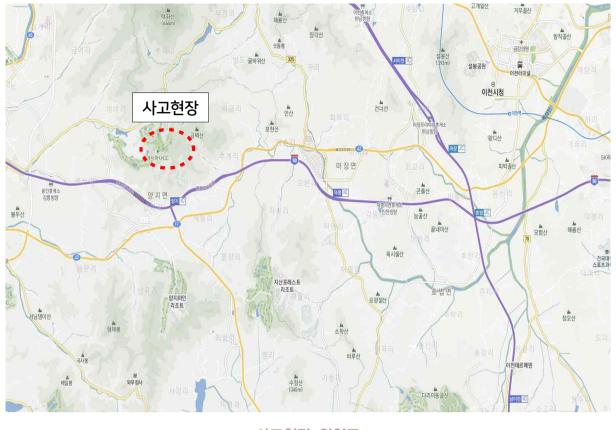
○ 당초 시공계획과 달리 PC슬래브 시공없이 외벽이 캔틸레버 형태로 먼저 시공되는 것으로 설계 변경 및 시공되었고, 이 과정에 적절한 외벽의 구조안전성 검토나 흙막이 해체와 관련한 검토는 수행되지 않음

## 2) 간접적인 사고원인

- 흙막이 배면에 비우호적 지반구조가 광범위하고 뚜렷하게 분포하였음에도 규격미달의 시추조사, 설계 지반조사 시 흙막이와 시추 위치 이격, 시료시험 미시행 등 지반조사가 지질구조 리스크의 사전 인지에 기여하지 못함
- 사업부지에 대하여 대규모, 대심도 흙막이 해체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흙막이 PC구조 등에 대한 안정성 검토 등의 절차가 없었음
- 시공 중 이상 징후를 예측하기 위한 계측은 주 단위 빈도로 진행되어 급격히 발생한 붕괴징후를 포착하지 못함
- '외벽'을 '옹벽'으로 인식하는 등 현장의 기술적 이해와 소통 부족
- 감리활동과 관련하여 토목공정 중에 토목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아 관련 전문기술 검토, 검측활동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다. 재발방지대책

- 공정계획, 시공계획 수립 및 변경에 따른 구조안정 검토 등 기술검토를 통한 안전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흙막이 안전성 계산을 통한 시공상세도 작성 및 지반조사를 통한 지반의 전반적인 상태 확인 등 안전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적절한 계측관리를 위해서는 계측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계측기기 관리기준, 계측기 망실 시 보완대책, 계측주기 및 변위발생 시 보강대책 등).



사고현장 위치도



